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. 22(금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1. 27(수)
- 상정일자 : 2016. 02. 01(월) 제21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남동선)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(표준안)」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, 그 밖의 지역출장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적용 법령 및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, 그 밖의 지역 출장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,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적용 법령 및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 [별표] 국내여비지급표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내용을 명시하였고
- 안 제6조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처 및 용어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 검토 결과

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부처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인사혁신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관용차량”을 “공용차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각각 “인사혁신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으로, 「일반계약직공무원」은 「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」, 「전문계약직공무원」은 「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」”을 “「공무원임용령」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으로, 「일반임기제공무원」은 「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」, 「전문임기제공무원」은 「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국내여비 지급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철도운임        | 선박운임        | 항공운임 | 자 동 차<br>(버스)운임 | 숙박비(1야당)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제1호 | 실비<br>(특실)  | 실비<br>(1등급) | 실비   | 실비              | 실비  |
| 제2호 | 실비<br>(일반실) | 실비<br>(2등급) | 실비   | 실비              | 실비<br>(상한액: 서울특별<br>시 70,000, 광역시<br>60,000, 그 밖의 지<br>역은 50,000) |

- 비 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[별표 3]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해당 철도운임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